

5. 所得稅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238號 1990. 7. 31 公布.

所得稅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8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8條의2(勤勞所得稅額控除) ①第21條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 第14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勤勞所得(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金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算出稅額에서 다음의 基準에 따라 計算한 金額을 控除한다. 다만, 控除稅額이 月 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660원을 控除한다.

1. 月定額給與가 100萬원 이하인 者 또는 日傭勤勞者의 경우에는 算出稅額의 100분의 40에 相當하는 金額

2. 月定額給與가 100萬원을 초과하는 者의 경우에는 算出稅額의 100분의 30에 相當하는 金額

②第1項의 경우 月定額給與가 100萬원을 초과하는 者로서 그 月定額給與에서

所得稅決定稅額(算出稅額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稅額을 差減한 후의 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控除한 金額이 月定額給與가 100만 원인 경우의 당해 月定額給與에서 그 所得稅決定稅額을 控除한 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金額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控除할 稅額의 合計額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稅額으로 한다.

③第152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에 대한 年末精算에 있어서는 第1項 本文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每月別로 控除할 稅額의 合計額(8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萬원으로 한다)을 당해 勤勞所得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控除한다.

④勤勞所得稅額控除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勤勞所得稅控除額에 관한 適用例)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0年 7月 1日 이후에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1990年度分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時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適用例) ①이 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52條 및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을 함에 있어서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은 1990年 6月 30日 이전에 發生한 所得에 있어서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을, 同年 7月 1日 이후에 發生한 所得에 있어서는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을 각각 適用하여, 計算하되, 同規定의 適

用期間에 따라 按分計算한 控除限度額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控除하지 아니한다. 다만, 同年 6月 30日 이전에 發生한 勤勞所得이 있는 者로서 同年 7月 1日 이후의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을 計算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計算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條(勤勞所得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1990年 6月 30日 이전에 發生한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每月分の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경우의 勤勞所得稅額控除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한다.

◁ 改正理由 ▷

來年부터 施行할 것을 目標로 推進하고 있는 全般的인 稅制改編에 앞서 今年 7月부터 勤勞者의 稅負擔을 輕減함으로써, 최근 勤勞者의 賃金引上自製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産業平和의 早期定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現在 勤勞者의 稅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勤勞所得에 대한 綜合所得產出稅額에서 그 100分の 20에 相當하는 金額을 年間 30萬원을 限度로 하여 控除하고 있는 바, 稅額控除率 및 控除限度를 上向調整함으로써 勤勞者의 稅負擔을 추가로 輕減하기 위하여 月給與가 100萬원 이하인 勤勞者의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算出稅額의 100分の 40에 相當하는 金額을, 月給與가 100萬원을 초과하는 勤勞者의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算出稅額의 100分の 30에 相當하는 金額을 그 算出稅額에서 控除하되, 年間 80萬원을 그 控除限度로 하며, 이는 1990年 7月 1日 이후 發生하는 勤勞所得分부터 適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所得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062號 1990. 7. 31 公布.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매월 별로 별표 2 간이세액표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197조제1항 중 “세액을 원천징수한다”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세액을 원천징수한다”를 각각 “산출세액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1990년도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의 계산) 법률 제4238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1990년 7월 1일 이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

2. 1990년 6월 30일 이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 다만,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만원으로 한다.

3. 1990년 6월 30일 이전의 근로소득과 1990년 7월 1일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다만, 그 합계액이 1990년 6월 30일 이전의 근로소득만으로 종전의 법 제7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의 공제세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가. 종합소득세액 × (1990년 6월 30일 이전의 근로제공월수/연간 근로제공월수) × 20/100

다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으로 한다.

나. 법 제7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공제

할 세액의 합계액. 다만,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만원으로 한다.

③(근로제공월수의 계산) 부칙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제공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한 월의 근로제공일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

◁ 主要骨子 ▷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簡易稅額表를 基準으로 하여 每月別로 源泉徵收하고 있는 바, 勤勞者의 稅負擔輕減을 위하여 所得稅法이 改正되어, 勤勞所得稅額控除率이 引上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每月別로 徵收하는 簡易稅額表상의 源泉徵收額을 調整하는 한편, 勤勞所得稅額控除率 등 勤勞所得稅額控除制가 課稅期間 중에 變更됨에 따라 今年度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精査(令 別表 2 및 附則 第2項).

〈법제처 제공〉